

1. 개정이유

G-113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항공작전기지 종류가 변경될 예정으로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 목록에서 제외하기 위한 개정임.

2. 주요내용

별표 2의 지원항공작전기지 활주로 등급에서 G-113을 삭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방부령 제 호
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4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			개정안			
[별표2]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 등(제3조제1항 관련)				[별표2]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 등(제3조제1항 관련)			
순번	기지명	활주로 등급	접근방식	순번	기지명	활주로 등급	접근방식
1~3		(생략)		1~3		(현행과 동일)	
4	<u>G-113</u>	<u>F</u>	<u>비계기접근</u>	4		<삭제>	
5~11		(생략)		5~11		(현행과 동일)	